안양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· 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

제정 2014. 10. 21 훈령 제620호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양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·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규제 신고고객 보호·서비스 헌장"(이하 "헌장"이라 한다)이란 안양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한다)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.
 - 2. "규제 신고고객 보호"란 규제개선,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 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 한다.
 - 3. "규제 신고고객 만족도"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들이 규 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시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양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.
- 제4조(헌장의 기본원칙)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
 - 2.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
 - 3.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
 - 4.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
 - 5.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
- 제5조(헌장의 내용)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.
- 제6조(헌장의 구성)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헌장 전문

안양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·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

- 2. 규제 신고고객의 비밀보장 및 보호
- 3. 규제 신고고객 보호 미흡에 대한 시정조치
- 4. 규제 신고고객의 만족도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
- 제7조(헌장 개정)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
 - 1.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
 - 2.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확정
 - 3. 헌장 공표 및 시행
- 제8조(헌장의 실천) ① 시 소속 공무원들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.
 - ③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제9조(헌장의 공표)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와 시보를 이용하여 공표한다.
 -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 야 한다.
 - ③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현장을 게시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잘못된 서비스 시정)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전화 및 전자우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.
 -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고객은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및 신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즉시 사실여부 를 확인·조사하고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시정조치 후 규제신고 고객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알려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이행실태 평가)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

및 규제신고 고객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우대조치)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이나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]

안양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

우리 안양시 전 공무원은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 공하고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

- 1. 우리는 불합리한 규제, 제도 및 관행을 수시로 정비·개선하여 시민이 편하고,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- 1. 우리는 규제개선, 애로제기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.
- 1. 우리는 규제 신고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,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- 1. 우리는 규제 신고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- 1. 우리는 규제, 제도, 정책을 수립,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규제 신고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, 규제 신고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